

●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184호

건설신기술 지정(2587)

‘발파진동 및 여굴 제어를 목적으로 전자뇌관과 비전기뇌관을 조합한 다단평행 천공 발파공법(New S.B.M)’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4월 12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신기술개발자

신청인(1)	법인명(성명)	에스케이에코플랜트(주)(박경일)		
	주 소	우03143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2길 19(수송동)		
	전화번호	02-3700-7085	팩스번호	-
신청인(2)	법인명(성명)	(주)엔에스비 나우이엔씨(김남수)		
	주 소	우05103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58길19, 302호(자양동, 광성빌딩)		
	전화번호	02-458-2646	팩스번호	-

2. 신기술의 개요

- 지정번호 : 제989호
- 명 칭 : 발파진동 및 여굴 제어를 목적으로 전자뇌관과 비전기뇌관을 조합한 다단평행 천공 발파공법(New S.B.M)
- 기술분야 : 토목 > 터널 > 터널 굴착(발파)
- 신기술의 내용
이 신기술은 전자뇌관과 비전기뇌관의 고유 특성인 정밀시차와 무한단차를 조합한 진동제어 발파공법으로, 터널 발파 시 최대 진동이 발생하는 심발부에 단공과 장공으로 다단 평행 천공하고, 심발부와 확대부 일부에 전자뇌관을 적용하고 장약하여 지발당 장약량 축소 및 단계별 2자유면 확장 발파로 진동제어가 가능한 공법이다. 또한 최외곽부 및 바닥부에 전자뇌관을 적용하여 진동 제어와 여굴 제어가 가능한 기술로 전자뇌관 사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발파공법이다.
- 신기술의 범위
심발영역을 단공과 장공으로 구분하여 다단 평행 천공하고, 활용목적에 따라 심발부, 확대부 일부, 최외곽부, 바닥부에 전자뇌관과 비전기뇌관을 조합하여 발파하는 공법

3.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

- 가. 보호기간 : 고시일로부터 8년
- 나. 보호내용 :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
-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
-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,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
-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

4. 신기술품셈

- 해당없음

5. 기 타

-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(<http://www.kaia.re.kr>) 「지식/성과도서관/신기술·추천기술」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